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(역모기지론용) (공동위탁자용)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6년 11월 30일

2. 개정내용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8조 (인감의 대조 및 책임) 수탁자는 수익자, 우선수익자가 제출한 제 청구서류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기 신고된 인영(또는 서명)과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어 신탁재산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, 변조,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인감이 위조·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**제18조 (인감의 대조 및 책임)** 수탁자는 수익자, 우선수익자가 제출한 제 청구서류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기 신고된 인영(또는 서명)과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어 신탁재산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, 변조,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인감이 위조·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등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	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면책 범위를 합리화함
제20조 (소송사무)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의 소송 등을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그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송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수탁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를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, 변호사의 보수 및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.	**제20조 (소송사무)**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의 소송 등을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그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송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수탁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를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, 변호사의 보수 및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와 수익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.	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위탁자 및 수익자 부담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합리화함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23조 (공동위탁자 등에 관한 특약) <생략>	**제23조 (공동위탁자 등에 관한 약정)** <생략>	용어 정비
제24조 (공동위탁자 등 의사표시에 관한 특약)	**제24조 (공동위탁자 등 의사표시에 관한 약정)**	용어 정비